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84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한병도·정태호·임오경

한정애 • 윤준병 • 이훈기

신정훈 • 윤건영 • 임호선

정동영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및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귀농일 3년이내에 취득한 농지·임야·농업용 시설과,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상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데 담보로제공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4'에 따르면, 농가인구 감소 속도가 전체인구 감소 속도보다 가팔라 2033년 농가인구가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초중반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로 식량안보 수호가 중요해짐에 따라 농어업 지원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귀농인, 농어업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

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농어촌 정주 및 농어업 종사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 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 ① ~ ③ (생 략) 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 유)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 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 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 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 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 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 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 4. (생 략)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생 략)
 -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 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u>2027년</u>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현행과 같
<u>수</u>)
②
202713
<u>2027년</u>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 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 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 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 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 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 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 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 ·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u>2027년</u>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
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	-
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	-
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	-
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따라 재산세를 <u>2024년</u> 12월 31	-
일까지 감면한다.	-

1. • 2. (생략)

<u>2027년</u>
1. · 2. (현행과 같음)